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108호 2015. 8. 13.(목)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2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2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1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4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12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8.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가정로58번길 30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8. 1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8-1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60-19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58번길 30 (가좌동)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29-27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5번길 52 (마전동)	2008-12-31	마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29-22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5번길 54 (마전동)	2008-12-31	마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49-5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3로 4 (오류동, 한일너클프레스주식회사)	2012-10-25	보듬로에서 세번째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61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 15 (경서동)	2013-07-30	보석을 이용한 경관구조계획 개념에서 착안	
6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21-4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96 (연희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44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58-29 (원창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30-1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 165 (경서동, 모아미래도)	2010-11-11	지구단위계획의 국제업무단지 지역	
9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850-8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267 (오류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담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1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22-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732-10 (마전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담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1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73-8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2로 32 (오류동, 2동)	2012-10-25	우리구 해님이 명소 정서진 명칭을 반영한 정서진로에서 분기되는 두번째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65-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122번길 3-1 (연희동)	2012-03-30	청라라임로의 시작점에서 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65-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42번길 5-3 (경서동)	2012-03-30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3-2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41번길 14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청중로 480 (가정동, 도토리프라자)	2010-11-11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로 청라중앙로를 줄인 말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12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08.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심곡로124번길 20-1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가좌동 560-19	가정로58번길 28	2015.08.03.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1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08. 1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를 개선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의 일부개정 사항과 구립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의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운영에 따라 목적사업을 명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복규제 해당하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삭제 【안 제7조】
- 상위법 근거 ‘비상임감사’ ⇒ ‘감사’ 【안 제8조6항】
- 민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안 제11조1항1호】
-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목적사업 추가 및 목적사업 세분화로 사업정비 【안 제26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자 : 사람만을 의미할 때는 “사람”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면 “자”로
 - 제1조에서는 약칭 사용 안함. 제2조부터 사용
 - 조 번호, 조 제목 : 붙여 씀

- 20인 → 20명, 의한 → 따른, 기타 → 그 밖에, 그 밖의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당해 → 해당, 지체없이 → 지체 없이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560-4064,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를 개선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의 일부개정 사항과 구립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의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운영에 따라 목적사업을 명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중복규제 해당하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삭제 【안 제7조】
- 상위법 근거 ‘비상임감사’ ⇒ ‘감사’ 【안 제8조6항】
- 민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안 제11조1항1호】
-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목적사업 추가 및 목적사업 세분화로 사업정비 【안 제26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자 : 사람만을 의미할 때는 “사람”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면 “자”로

- 제1조에서는 약칭 사용 안함. 제2조부터 사용
- 조 번호, 조 제목 : 붙여 씀
- 20인 → 20명, 의한 → 따른, 기타 → 그 밖에, 그 밖의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당해 → 해당, 지체없이 → 지체 없이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별지 참조”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법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가”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

0미만으로”를 “50 미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추천한 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추천한 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관으로”를 “정관의”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추천한 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히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인”을 “7명”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 2인”을 “사람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 3인”을 “사람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 2인”을 “사람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퇴직한 자”를 “퇴직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과 공단의 정관에 의한다”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과 공단의 정관을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4항의 규정에”를 “제4항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닌 자”를 “아닌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

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정지된 자”를 “정지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자 이었음”을 “사람이었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를 “정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7조 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정하는 정관에 따라”로, “또는 재판외의”를 “또는 재판 외의”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문화체육”을 “문화·체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 사업

8. 그 밖의 사업<종전 제7호에서 이동>

제27조제1항 중 “또는 기타”를 “또는 그 밖에”로, “위탁계약에 의한다”를

“위탁계약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를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30조 중 “회계연도에 의한다”를 “회계연도를 따른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개시전까지”를 “개시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66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9조 중 “의하거나”를 “따르거나”로 한다.

제40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로 한다.

제41조 중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지방공기업법의」”로 한다.

제4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의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지방공기업법</u> 」 제76조제1항에 따라 <u>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u> 을 설치하여 <u>인천광역시 서구</u> - ----- ----- ----- ----- -----.
제2조(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 <u>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u> 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생 략) ②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u>	제3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u> ----- ----- -----.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며, <u>구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u>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u>	제4조(자본금) ① ----- ----- -- <u>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u> --. ② <u>제1항에 따른</u> -----

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생략)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의한 공단이 아닌 자는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지 못한다.

제8조(임원) ① (생략)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
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
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
에서 임명한다.

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
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
단의 업무와 관련한 국장과 세
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
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
의 50미만으로 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

-----.

제5조(정관) ① -----
-----각 호의 -----
-----.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의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람
중에서 -----.

③ -----

50 미만으로 -----.

④ -----

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⑤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감사는 구청장이 임명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추천한 사람 -----.

⑤ -----

-----추천한 사람 -----.
--정관의 -----
-----제외한다.

⑥ -----

-----추천한 사람 -----
-----.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7명 -----
-----사람으로 -----.

1. -----사람 2명
2. -----사람 3명
3. -----
-사람 2명

③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u>퇴직한 자</u>	3. ----- ----- ----- <u>퇴직한 사람</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u>인정되는 자</u>	5. ----- ----- <u>인정되는 사람</u>
④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과 공단의 정관에 의한다.</u>	④ ----- -----「지 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과 공단의 정관을 따른다.
제10조(임기 및 직무) ① ~ ③ (생략)	제10조(임기 및 직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u>의한</u> 이사장의 연 임 기준은 법 제58조 <u>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u>	④ ----- <u>따른</u> ----- ----- <u>제4항 을</u>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u>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u> 임원 이 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u> -----.
1. 대한민국 국민이 <u>아닌 자</u>	1. ----- <u>아닌 사람</u>
2. 미성년자, <u>금치산자, 한정치 산자와</u>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u>아니한 자</u>	2. ----- <u>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u> ----- ----- <u>아니한 사람</u>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3. ----- ----- -----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
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
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장이 임면한다.

② 공단의 직원의 임용은 시험
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해야 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
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
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
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
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

-----아니한 사람

4. -----따
라 -----정지된 사람

5. -----
-----아니한 사람

②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
-----사람이었음 -----
-----.

③ 제2항에 따라 -----

-----.

제12조(직원의 임면) ① -----
정관에 -----
-----.

② -----

-----따라 -----.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

원은 <u>그러하지 아니하다.</u>	-- <u>제외한다.</u>
제14조(이사회) ①·② (생략)	제14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⑦ 이사회 <u>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 <u>운영에</u> -----.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생략)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공단 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을 경 우, 당연직 이사 중 총무국장이 공단을 대표한다.	② <u>제1항에 따라</u> ----- ----- ----- -----.
제16조(비밀누설 금지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등) ----- ----- <u>사</u> <u>람은</u> ----- ----- -----.
제17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 임) 공단의 이사장이 <u>정관이 정</u> <u>하는 바에 의하여</u> 지명하는 임 · 직원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 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 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7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 임) ----- <u>정하는</u> <u>정관에 따라</u> ----- ----- ----- <u>또는 재판 외의</u> -----.
제18조(이사회·위원회 및 임원 제척사유) 다음 <u>각호의 1에</u> 해당 하는 경우는 제척사유가 된다. 1. ~ 4. (생략)	제18조(이사회·위원회 및 임원 제척사유) ----- <u>각 호의 어느</u> <u>하나에</u> -----. 1. ~ 4. (현행과 같음)

제26조(목적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수 있다.

1. (생략)
2. 문화회관 및 문화체육·청소년시설물 관리운영
3.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4. ~ 6. (생략)
- <신설>

7. (생략)

제27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목적사업) -----

- 각 호의 -----.

1. (현행과 같음)
2. ----- 및 문화·체육·청소년시설물 -----
3. 노인복지 및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관리운영
4. ~ 6. (현행과 같음)
7.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 사업
8. 그 밖의 사업<중전 제7호에 서 이동>

제27조(대행사업) ① -----

----- 또는 그 밖에

----- 위탁계약을 따른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

제30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지침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수 있다.

④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와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

제30조(사업연도) -----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개시 전까지 -----.

② -----
-----지체 없이 -----.

③ -----
-----제66조의2에 따른 -----.

④ -----
-----지체 없이 -----.

제33조(결산) ① -----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를 첨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 략)

제36조(감독) ① (생 략)

②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1. ~ 3. (생 략)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
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
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 · 과 · 소와 동일하게
평정 · 관리 한다.

제41조(기타법령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지 체 없 이 -----
-----.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39조(공무원의 파견) -----
-----따 르 거
나 -----

-----.

제4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
관리) -----
-----「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에 따 라 -----
-----.

제41조(기타법령 준용) -----

-----「지 방 공 기 업 법 의」 -----.

제42조(시행규칙) -----시
행 에 -----

으로 정한다.

-----.